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98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안상훈 · 김미애 · 이소희
이종배 · 권영세 · 한지아
박상웅 · 김예지 · 고동진
이종욱 · 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없어, 이용자가 장시간 대화하거나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그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의

방법·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을 사실 조사 및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대화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방법 및”을 “방법,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주기 및”으로 한다.

- 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이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1조제2항·제3항”을 각각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 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 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 이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사실 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u>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 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 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u>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⑤ -----</u> ----- ----- <u>방법,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u> <u>법·주기 및-----</u> -----.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 ----- ----- ----- ----- -----

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u>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u> 2. <u>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u> ②·③ (생략)	-----. 1. <u>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u> ----- ----- ----- ----- 2. <u>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